

# 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pute Cases and Improvement Related to the FTA  
Cumulation: A Focus on the KOREA-ASEAN FTA

고재길\*  
Jai-Kil Ko

## 〈목 차〉

- I. 서론
  - II. FTA 원산지누적 유형 및 한-아세안 FTA 적용 현황
  - III. 한-아세안 FTA 원산지 누적기준 관련 분쟁사례
  -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한-아세안 FTA, 원산지누적, 원산지검증, 재료누적, 양자누적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경영기획본부 부장, 경제학박사, [koin777@naver.com](mailto:koin777@naver.com)

## I. 서론

그동안 글로벌 통상환경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탈세계화 움직임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자국우선주의와 무역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가로 지향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까지 16건에 걸쳐 5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세계 각 지역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미-중간 통상분쟁 심화와 전세계적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는 현시점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질적 변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FTA 활용에 있어서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준수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기존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한 무역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다자간 FTA의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 온 FTA 원산지 누적(Cumulation)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누적조항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원산지의 영역을 확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효한 모든 FTA 협정에서 누적조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 원산지 누적기준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이해부족, 각 FTA 협정별 모호한 규정 등으로 원산지 누적조항 적용 및 검증과정에서 기업들과 관세당국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가속화 추세 속에서 그동안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그중에서 원산지누적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권순국(2012)<sup>1)</sup>은 유사누적 기준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하였고, 김영춘·박홍규·송병준(2015)<sup>2)</sup>은 누적의 유형별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강준하(2015)<sup>3)</sup>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 1) 권순국,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 pp.101-118.
- 2) 김영춘·박홍규·송병준,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5.5, pp.3-28.
- 3) 강준하, “FTA 원산지규정상 누적이란 전략적 접근: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3, pp.7-33.

누적조항의 Text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박지은·제현정(2016)<sup>4)</sup>은 누적조항의 특성과 활용현황을, 임목삼·임성철(2016)<sup>5)</sup>은 Mega-FTA 시대의 누적기준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강성훈·이재선·김미정(2017)<sup>6)</sup>은 누적기준의 적용방법과 문제점 등을 각각 연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로서, 조미진·이병문·송경은(2015)<sup>7)</sup>은 누적조항을 포함한 원산지관리 전반의 비용부담 소요를, 정철 외(2017)<sup>8)</sup>은 실증분석을 통해 누적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각각 연구하였다. 그리고, 조정란·유정호·임병호(2019)<sup>9)</sup>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교차누적의 경제적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 체결 FTA 중에서 한국 수입업체들이 FTA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누적조항과 관련하여 관세당국과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관세당국과 무역기업 간 분쟁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원산지 누적조항 활용에 대한 평가 및 재검점을 통해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유념해야 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FTA 원산지 누적조항 관련 개요 및 적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누적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판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 기 체결 FTA 원산지기준 누적조항 관련 시사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Ⅱ. FTA 원산지누적 유형 및 한-아세안 FTA 적용 현황

### 1. FTA 원산지 누적기준 분류 및 도입 개관

#### (1) FTA 원산지규정과 누적기준

FTA 체결의 주목적은 협정국간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함으로써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수입물품이 FTA 당사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 바로 원

- 4) 박지은·제현정, “무역업체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트레이드포커스』, 2016년 18호, 한국무역협회, 2016.5.
- 5) 임목삼·임성철,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6.11, pp.89-111.
- 6) 강성훈·이재선·김미정,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3.
- 7) 조미진·이병문·송경은,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비용”,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8, pp.163-186.
- 8) 정철·박순찬·박인원·김민성·곽소영·정민철, 「원산지 누적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11.
- 9) 조정란·유정호·임병호, “FTA 원산지누적의 경제적 효과: 베트남 섬유산업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9.2, pp.207-220.

산지규정이다. 즉,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하므로,<sup>10)</sup> 원산지규정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표 1〉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체계

구 분	종 류		
기본원칙	①직접운송원칙 ②역내가공원칙 ③충분가공원칙		
일반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단독기준	①세 번변경기준 ②부가가치기준 ③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2개이상 제시되는 단독기준 중 1개만 선택하여 충족
		조합기준	2개이상 제시되는 단독기준 모두를 충족
보충기준	①누적기준 ②최소허용기준 ③중간재 규정 ④대체가능물품 ⑤간접재료 ⑥포장·운송용기 ⑦세트물품 ⑧부속품, 예비부품 등		

\* 강성훈 외,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3, p.1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FTA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원칙과 일반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반기준을 보다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충기준이며, 누적기준은 이러한 보충기준 중의 하나이다. 원산지 누적조항은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물품 생산시 해당재료를 자국산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통합의 효과를 높이고, 당사국에게 복잡한 원산지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작용한다.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은 하나의 국가(일방 당사국, 수출국)에서 충족되어야 하지만 누적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 공정, 또는 부가가치를 포함시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례에 해당한다.<sup>11)</sup> 글로벌 생산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단일국가 내에서 원산지지위 획득을 충족시킬 실질적 변형 또는 충분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FTA 체결국 간 기존 역내 생산 및 중간재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원산지 누적조항이 활용되고 있다.<sup>12)</sup> 즉, FTA 원산지규정에 누적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행할 지 여부가 당사국들의 FTA 특혜 실현가능 여부와 직결된다.<sup>13)</sup>

10)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1) 임목삼·임성철, 전계논문, 2016.11, p.92.

12) 박지은·제현정, 전게서, 2016.5, p.2.

13) 강준하, 전계논문, 2015.3, p.8.

## (2) FTA 원산지 누적기준 구분

누적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FTA 상대국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 또는 상대국 수행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창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산 부품과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인도네시아산 부품 모두를 역내산 재료로 인정하는 것이다. 누적은 분업생산 참여 국가들 간의 FTA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누적조항이 있는데, 누적을 통하여 원산지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누적이 적용되는 영역, 누적이 허용되는 계약당사자국의 수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4)</sup>

먼저 누적이 대상은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 ‘공정’, ‘부가가치’ 등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재료만을 누적하는 ‘재료누적’과 공정과 부가가치를 누적하는 ‘공정누적’으로 분류된다. ‘재료누적’은 계약당사국으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고, 이를 생산과정에 사용하여 최종상품 생산시 수입재료들을 최종상품 생산국가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누적대상의 일부인 원산지재료만의 누적을 허용하므로 ‘부분누적(Partial cumulation)’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공정누적’은 FTA 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을 자국수행 공정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써, FTA 상대국의 원산지재료 뿐만 아니라 비원산지재료의 역내공정 및 해당 공정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하는 즉, 모든 누적대상의 누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완전누적(Full Cumulation)’으로 일컫는다.<sup>15)</sup>

두 번째 기준으로 누적이 적용되는 영역의 범위에 따라서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이란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부품이나 재료를 자국 생산분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누적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이다.<sup>16)</sup> 다음으로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은 3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각 FTA 당사국 간에 제3국의 누적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이란 가장 광범위한 누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FTA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 뿐만 아니라 비원산지재료의 공정, 부가가치 등을 모두 누적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차누적(Cross-cumulation)’ 개념과 유사한데, 다만 ‘교차누적’의 경우 계약국들이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명시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한-캐나다 FTA와 지난 2020년 8월 발효되어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직물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EU-베트남 FTA 등에서 채택하였다.

14) 강성훈·이재선·김미정, 전게서, 2017.3, p.91.

15) 강준하, 전게논문, 2015.3, p.36.

16) 박지은·제현정, 전게논문, 2016.5, p.4.

<그림 1>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도



\* 관세청, “EU-베트남 FTA 8월 시행 앞두고 인증 취득지원”, 보도자료 2020.6.25일자

EU-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섬유 원부자재 생산·조달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EU 및 베트남이 각각 FTA를 체결하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특정 품목에 한하여 누적(교차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세번째 기준으로 누적이 이루어지는 계약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국누적’, ‘다국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양국누적’은 FTA 계약당사국이 각각 한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며, 1:1 형태의 FTA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누적이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국누적’이란 FTA 협정국 일방 또는 양쪽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누적이 형태이다.

이상의 구분기준에 의해 우리나라가 기 발효한 16개 FTA협정별로 원산지 누적기준 도입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우리나라 기 체결 FTA별 원산지 누적기준 도입현황

구분	누적 대상	누적 적용영역	계약 당사국수
한-칠레	재료&공정누적	양자누적(+일부 완전누적)	양국누적
한-싱가포르	재료&공정누적	양자누적(+일부 완전누적)	양국누적
한-EFTA	재료누적	양자누적	다국누적
한-아세안	재료누적	양자누적	다국누적(일부 예외)
한-인도	재료누적	양자누적	양국누적
한-EU	재료누적	양자누적	양국누적
한-페루	재료&공정누적	양자누적(+일부 완전누적)	양국누적
한-미국	재료&공정누적	양자누적(+일부 완전누적)	양국누적
한-터키	재료누적	양자누적	양국누적
한-호주	재료&공정누적	양자누적(+일부 완전누적)	양국누적

구 분	누적 대상	누적 적용영역	체약 당사국수
한-캐나다	재료누적	양자누적(+일부 교차누적)	양국누적
한-중국	재료누적	양자누적	양국누적
한-뉴질랜드	재료&공정누적	양자누적(+일부 완전누적)	양국누적
한-베트남	재료누적	양자누적	양국누적
한-콜롬비아	재료&공정누적	양자누적(+일부 완전누적)	양국누적
한-중미	재료누적	양자누적	다국누적((섬유 제외))

\* 한국의 FTA 협정문 및 관세청 'FTA포탈'(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바탕으로 저작 작성

## 2. 한-아세안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

### (1) 한-아세안 무역과 FTA 활용현황

아세안지역은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포스트차이나 생산거점이자 세계의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였다.17)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핵심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게도 역시 지난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대 아세안 경제협력 및 무역이 급증하여 2019년 기준 중국(24.8%)에 이어 15.9%를 차지하는 제2위의 수출대상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 정부 들어 아세안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경제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18)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한국의 주요 무역파트너 현황

(단위 : %)

구 분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중 국	2.1	9.4	22.7	23.6	23.4	23.0	23.6	24.8
아세안	7.7	11.5	11.6	12.4	13.2	14.2	14.0	15.6
미 국	26.9	20.1	10.0	11.8	12.2	11.5	11.5	13.7
E U	14.1	11.8	9.0	10.9	10.9	10.6	10.5	10.1
일 본	23.1	15.7	10.7	7.4	8.0	7.8	7.5	7.8
기 타	26.1	31.5	36.0	33.8	32.3	32.9	32.9	28.0

\* IMF 무역통계연감 및 한-아세안센터(www.aseakorea.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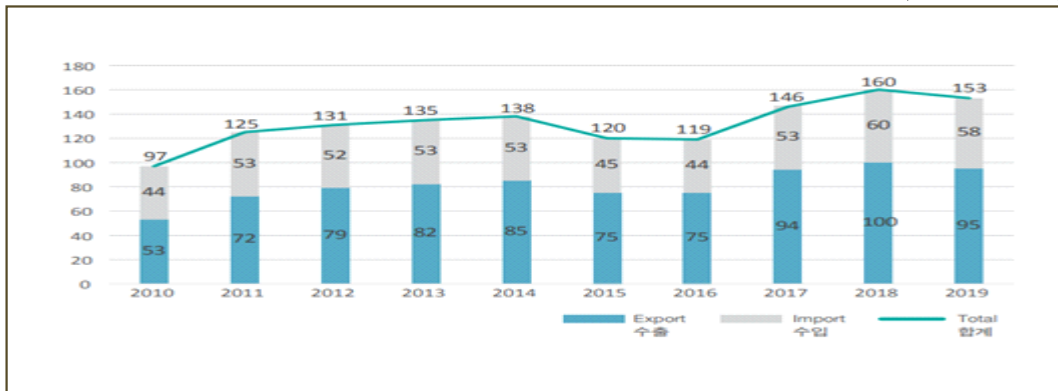
17) 민혁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KIET 산업경제」, 2020년 9월호, 산업연구원, 2019.9, p.7.

18)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천명한 정책으로 대외여건 변화 대응과 협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미·중·일·러 4강 수준의 정치·외교·경제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적 대외정책임.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그리고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번째 FTA로서 아세안 개별국마다 자국의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품목을 배정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국가마다 관심있는 상품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다자간 협상에 주로 사용된다.<sup>19)</sup> 한-아세안 FTA는 사실상 한국이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조직인 아세안에 가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sup>20)</sup> 빠르게 성장 중인 아세안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전반적인 글로벌 통상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동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무역은 꾸준히 확대되었다.<sup>21)</sup>

〈그림 2〉 한-아세안 무역량 추이

(단위 : 십억달러)



\* IMF 무역통계연감 및 한-아세안센터(www.aseakorea.org) (검색일자 2020.10.12)

그러나, 이러한 아세안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특히 수출활용률<sup>22)</sup>은 2019년 기준 전체 FTA 평균인 74.9%에 크게 못 미치는 51.3%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 김성룡, “한-아세안 FTA 주요국 통관 및 중재제도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9.11, p.145.  
 20) 최송자,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 고찰”,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2, p.49.  
 21) 김정덕·곽동철, “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트레이드포커스』, 2017년 24호, 한국무역협회, 2017.6, p.17.  
 22) 수출활용률=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표 4〉 한국의 FTA 협정별 수출입활용률 추이

(단위 : %)

협정 대상국	수출활용률					수입활용률				
	'12	'16	'17	'18	'19	'12	'16	'17	'18	'19
칠레	75.2	78.6	77.6	85.2	79.6	97.9	99.3	99.5	98.4	99.2
EFTA	79.8	80.4	82.2	84.2	83.2	61.9	56.8	60.0	63.7	64.0
아세안	37.7	52.3	46.1	52.1	51.3	73.8	73.5	75.5	76.8	79.2
인도	36.2	65.8	67.5	70.9	73.0	52.7	56.0	61.5	57.3	56.6
EU	81.4	84.8	85.5	86.7	86.9	66.8	72.1	76.3	76.4	76.6
페루	78.0	83.3	78.2	79.5	84.7	92.0	77.5	82.1	87.9	81.4
미국	69.4	75.6	86.1	86.0	85.2	61.0	70.7	70.6	70.2	68.1
터키	-	80.4	71.9	80.1	77.5	-	65.9	63.4	66.5	68.9
호주	-	77.4	80.1	82.7	82.8	-	79.2	85.6	79.1	85.7
캐나다	-	89.1	93.4	93.6	95.2	-	75.1	83.6	80.6	77.9
중국	-	33.9	49.7	55.0	57.2	-	58.1	68.6	74.9	80.1
베트남	-	36.9	50.4	47.8	46.1	-	88.2	86.7	90.0	85.7
뉴질랜드	-	31.8	35.3	36.0	41.2	-	87.3	86.5	89.9	93.7
콜롬비아	-	17.4	49.8	53.0	52.9	-	66.4	87.2	90.3	88.9
합계	62.7	63.8	70.0	73.5	74.9	67.0	69.6	74.0	75.3	76.6

\*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및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 자료를 토대로 저자작성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화 수준과 복잡한 협정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반영하여 3차에 걸친 상품협정 개정<sup>23)</sup>과 2차에 걸친 원산지 관련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2014년에는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발급시기 명확화',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협정 자유화 수준 제고의 기회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과의 낮은 FTA 활용률에는 GVC로 인한 원산지기준 충족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GVC가 복잡하면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지기 때문에 원재료의 이동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sup>24)</sup> 즉,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을 개선하는 것인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누적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수출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하며, 이에 앞서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의 누적조항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상품협정 개정 1차 의정서(2011.3.), 2차 의정서(2012.7.), 3차 의정서(2016.1.)

24) 조정란·유정호·임병호, 전계논문, 2019.2, p.208.

**(2) 한-아세안 FTA 원산지 누적규정 현황**

한-아세안 FTA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협정」)하에 ‘상품협정’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규정은 ‘상품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로 첨부되어 있다. 동 FTA에서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의미하며, 원산지자격을 갖춘 재료는 누적규정에 따라 원산지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2조(원산지기준)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나호에 ‘그 상품이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5〉 한-아세안 FTA 누적조항

구분	누적조항 내용
국문	제7조 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 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영문	Rule 7 ACCUMULA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nnex,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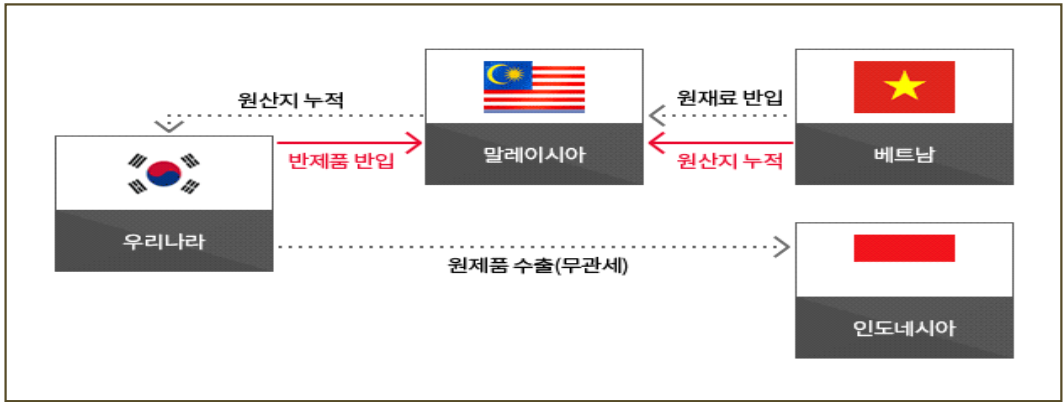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7조(누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 협정」은 누적기준을 규정한 조문에서 ‘계약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이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재료누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품목별기준을 통해 공정누적을 제한적으로 인정<sup>25)</sup>하고 있다. 또한 1:N 협정으로 10개국<sup>26)</sup>으로 구성된 아세안 국가 내 ‘다국누적’이 가능한데, 베트남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 생산 최종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베트남 원산지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25) 제6101호의 품목별기준에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도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단·봉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26)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그림 3〉 한-아세안 FTA 누적조항 활용모델



\*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63&cntntsId=1033#>) (검색일자 2020.10.5.)

이밖에 원산지검증과 관련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제13조~1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검증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및 수출자는 신청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발급기관 역시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sup>27)</sup> 이와 함께 수입당사국은 원산지 관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시,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8)</sup> 그리고 수입당사국이 만약 사후검증의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하여 직접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sup>29)</sup>

### Ⅲ. 한-아세안 FTA 원산지 누적기준 관련 분쟁사례

주요국들과의 FTA협정 발효건수가 늘어나면서 원산지검증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수입검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아세안 FTA 활용 업체와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각 FTA 협정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추징 업체수와 대상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는데, 그 현황을 보면 <표 6>과 같

27)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제13조

28)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제14조

29)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제15조

다. 특히 대상 국가별로는 ‘EU’ 및 ‘미국’ 다음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의 추정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0월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의 “원산지 누적”과 관련한 심사청구 사례는 총 ‘20건’이며<sup>30)</sup>, 이 중에서 FTA 관련 ‘11건’ 중 한-아세안 FTA 관련 사안이 ‘10건’으로 확인되었고, 대표적인 주요 쟁점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의 주요 FTA 특혜관세 협정별 추정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대상국	2012		2014		2016		2017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EFTA	21	4,881	8	2,531	11	862	4	543
아세안	80	4,197	43	18,179	56	18,796	67	9,552
인도	49	298	3	241	3	317	11	1,781
EU	53	2,499	324	32,932	269	34,085	232	65,452
미국	2	10	60	22,117	76	9,544	114	9,827
중국	-	-	-	-	75	3,093	224	8,229
캐나다	-	-	-	-	5	606	12	2,325
소계	215	12,078	442	76,114	506	67,571	677	98,354

\*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저자작성

## 1. 쟁점원재료의 역내 누적적용 입증서류 충족범위 관련<sup>31)</sup>

### (1) 사건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말레이시아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자료 불충분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해당 관세당국은 대상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한다고 회신하면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였으나, 말레이시아 외 다른 협정국의 원재료가 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수출국에 쟁점원재료가 해당국가 원산지상품임의 판단근거 및 증명자료를 추가 질의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면서,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처분청은 수출자 대상 현지 직접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수출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원산지재료에 포함하여 RVC를 계산한 것을 확인하고,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B/L, 수입신고서, 공급자 송품장, 검

30)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ft.go.kr) (2020.10.10. 접속 기준)

31) 조심2017판0316 (2018.11.21.)

사보고서, 원산지증명서, 계약서 등을 제출받았다.

한편, 수출국 관세당국은 누적기준을 적용한 수입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무세율 품목이어서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요청되지 않았으며, 대신 처분청의 현지 직접검증시 위에서 예시된 원산지증명서 대체 서류로 제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검증결과를 토대로 해당 증빙서류로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재산정한 결과, 쟁점물품의 RVC가 40%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2) 당사자 주장

### ① 청구법인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쟁점물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산출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구매한 쟁점원재료에 대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적용, 역내산으로 취급하여 공제법에 기초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산출된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FOB가격 대비 40% 이상이므로 쟁점물품을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발행하였다. 즉, 현지 자국법령에 따라 타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재료의 검사보고서, 수입신고서(Form K1),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역내산으로 판정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Form AK'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 ② 처분청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쟁점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으나, 누적적용 원산지기준 충족이 확인되는 신뢰가능 서류로 볼 수 없어 역내산 원재료임을 부인한 것이다. 또한 위 예시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여도 쟁점물품은 RVC 40%에 크게 미달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변함이 없다. 처분청은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증명 대체가능 주장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누적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쟁점원재료가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함에 있어 'Form AK'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원산지 누적기준 충족 확인의 신뢰가능 서류'에 의할 경우에는 충분하

다. 쟁점원재료가 누적기준 적용 원산지상품임의 입증을 위해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검사보고서’<sup>32)</sup>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제 하에 발급되는 점, 수출자·수입자, 송품장 번호, 선적항·도착항, 품명, HS, 등급, 수량, 컨테이너 Seal 번호 등과 원산지로 채굴지인 인도네시아 지역명이 기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보고서’는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는 신뢰가능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보고서’를 쟁점원재료가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원산지재료 가격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RVC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2. 쟁점원재료의 누적기준충족 증빙미비로 협정관세 배제<sup>33)</sup>

### (1)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카메라렌즈 생산회사로서 아세안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Lens, Barrel, Mask 등의 쟁점원재료 수출 후 이를 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국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세 번이 동일하여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 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출국 통상부에 국제검증을 요청하면서 관련 자료 송부를 요청하였다. 수출국 통상부는 협정상 회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와 이유에 대한 제시 없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라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내용 상에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각각의 품목번호가 동일하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협정관세 배제 및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2) 당사자 주장

#### ① 청구법인

단지 원산지증명서라는 형식적 서류의 불비를 이유로 누적기준 충족 원산지 재료임이 명백한 중간원재료 전부를 비원산지재료로 보아,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결정은 한국 관세당국

32) 청구법인 제출 검사보고서 상에는 발급사무실, 발급일자, 유효일자, 수출자, 포장명세서 번호, 인보이스 번호, 가격, 선적항, 선적일, 도착항, 품명, 등급, 수량, 컨테이너 번호, 발급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33) 조심2016관0190 (2017.5.22.)

의 유권해석으로 국내에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바, 한국 세관의 유권해석을 수출국 통상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수출자는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수출국 통상부는 '6단위 세 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당처분은 위법하다.

## ② 처분청

수출국에서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한국산 원산지재료를 수출국 원산지재료로 인정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한국산 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만,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쟁점원재료에 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었다면 쟁점원재료는 누적기준이 적용되어 수출국 원산지재료가 되므로 쟁점물품은 세번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수출자에게 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원재료는 누적기준 적용가능 원산지재료로 인정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임이 분명하고, 쟁점물품은 수출국 통상부가 '6단위 세 번변경'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거듭 확인한 바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쟁점원재료가 반드시 한국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비원산지재료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쟁점물품은 '6단위 세 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서로 동일하여 쟁점물품이 '6단위 세 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누적조항 입증서류 범위에 대한 당사자간 입장차이 관련<sup>34)</sup>

#### (1)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자국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0 ~66.49%”로 기재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 실시 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을 통해 대상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검증요청 물품의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협정 비당사자 및 아세안 외 타지역 국가에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2) 당사자 주장

##### ① 청구법인

협정상의 누적조항에는 누적기준과 관련한 원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 서식이 나 별도 형태의 증명서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세안이 체결한 타 FTA에서도 누적기준 입증가능 서류의 범위에 대해 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건의 경우 누적기준을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수출국 발급기관이 이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간접검증 과정에서도 재차 이를 확인하고 검증결과 역내산임을 통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수출국 법령 및 발급기관의 처리절차에 따라 당해 원재료 구매 관련서류 및 입고서류·생산투입 및 재고서류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처분청

누적규정을 적용한 RV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가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임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원재료의 상당량이 비협정국에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수출자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 증빙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검량증명서 및 아세안협정에 따른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등 대체서류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작성 목적이 달라 해당 서류로는 협정상

34) 조심2019관0042 (2019.8.21.)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발급주체 또한 원산지확인 관련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서류에 기재된 원산지를 신뢰성 있는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협정에 따라 쟁점원산지증명서 건별로 RVC를 재산정한 결과, RVC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조세심판원의 결정

협정상 누적규정에 따라 최종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쟁점수출자 제출서류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주체 또한 해당 거래의 당사자나 운송인 등으로 원산지확인 관련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VC는 38~39%에 불과하여 RVC 40% 이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은 ‘RVC’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CTH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1. 누적기준 입증서류 인정 범위 및 증명양식 마련

제III장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의 적용에 있어 무역업계와 관세당국 간 발생하는 다툼 또는 이견들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누적기준 입증서류의 인정 범위”에 관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누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적대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해당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있어 누적적용이 불가하거나 사후 검증시 추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누적기준 적용에 있어서 원재료의 역내산 판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는 협정대상국 및 우리나라 세관당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업체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즉, 양협약당사국이 애초에 합의한 FTA 공식 문서에 누적기준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서류가 입증서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다툼은 어쩌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3조 등의 수출당사국의 권리가 「동 부록」 제14조 내지 제16조 등에서 규정한 수입당사국의 검증결과를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동 부록」 제17조는 “이 부록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출당사국의 입장과 수입당사국 관세당국 간의 입장이 상이할 경우에 실질적인 피해는 그대로 해당 업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누적기준 관련 명확한 해석과 해당규정의 미비로 인해 생산자나 원재료 공급자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판정 및 증빙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원산지검증 시 세관당국의 해석과 상이하다면 협정세율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가공공정이나 부가가치를 증빙하는 서류인 ‘제조공정도’, ‘제조원가명세서’를 증빙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검증 시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불합리한 관행 해결과 통관행정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한 계약국 관세당국 간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국 세관당국 간 협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논의되거나, 국내 유관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청취, 필요에 따라 협정규정의 개정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와 아세안 수출국 세관당국 간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수출자 및 수출국 세관당국의 역내 부가가치 판정 및 원산지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관당국이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를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진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양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7년에 한국 관세청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간에 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양국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동일 쟁점을 가진 나머지 업체들은 일정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정관세 배제처분을 보류한 경우도 있었다.<sup>35)</sup>

둘째로는 아세안국가 간 누적이 발생하는 경우 누적대상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수행된 공정이나 생산에 대한 증명방식과 검증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누적 원재료를 증빙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별도 양식으로 마련하거나 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의 양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례1’에서 조세심판원이 ‘검사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인정한 바 있는데, 원산지 판정의 가장 기초서류이자 실질적으로 원산지검증 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BOM<sup>36)</sup>에 대해 ‘한-아세안 FTA 표준 BOM’ 양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수 있다. 수출자가 FTA 누적 원산지 판정을 위해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내역, 투입수량 등 기본정보와 각 원재료별 원산지정보·가격 등을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표 2>에서 본바와 같이 ‘한-아세안’을 비롯하여 ‘한-EFTA’ 및 ‘한-중미’ 등 ‘다국누적’이 적용되는 FTA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누적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간소화 방안 역시 검토 가능할 것이다. 즉, 누적대상의 증빙 문제는 증명서 발급절차의 간소화, 적용 규정의 명확화, 증명양식의 마련 등을 통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sup>37)</sup>

## 2. 상대방(원재료 공급자 등) 협조문제 해소방안 마련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 활용시 대부분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입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의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1:N 협정에서 원산지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계약당사국이지만 서로 계약상대국이 아닌 N국 간 거래는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 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사례에서 베트남이 원산지인 재료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한다면 베트남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생산자 최종제품의 원산지판정을 위하여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재료 공급자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공정과 부가가치를 누적하는 ‘공정누적’의 경우 관련 제조공정이 해당업체만의 노하우일 수 있으며, 원재료 공급자의 이윤 등의 노출을 우려하여 자료제공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수입업체는 세관당국 차원의 서면조사 대응 등을 위해 누적관련 사

35) 조심2017관0316 (2018.11.21.)

36) BOM(Bill of Materials)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분품에 대한 상세내역을 의미하는데, 특정 물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어떠한 원재료 및 부분품들이 소요되며, 어떻게 모여 최종 완제품을 구성하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원재료명세서임.

37) 강성훈·이재선·김미정, 전계서, 2017.3, p.94.

실관계 및 서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재료의 단가나 구매처 정보가 노출되는 민감정보, 기타 생산·영업 관련 상세서류 등을 해외 수출자 및 생산업체 등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sup>38)</sup>

Ⅲ장 사례에서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향후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외하면서 원재료명세서 및 원재료수불부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기업의 기밀자료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은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 수입자에게 있으며, 원산지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한 수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의 심판결정 사례를 보면, 조세심판원에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증빙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sup>39)</sup> 법원판결 역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sup>40)</sup>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재료공급자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누적조항의 활용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이 원재료공급자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재료공급자 차원에서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sup>41)</sup> 두 번째로는 양당사자 간 계약체결시 원산지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민감정보 해당시 상대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 등 관계자들의 협조사항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sup>42)</sup>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세사 등 대리인에게라도 제공할 의무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앞서 제안한 ‘한-아세안 FTA 표준 BOM’ 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BOM 양식을 수출자가 필수로 작성·보관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38) 고재길, “FTA 원산지검증에 대응한 효율적인 매매계약 체결방안 : 한·EU FTA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2020.6, p.564.

39) 조심 2015관82·257, 2016.6.7. 및 2015관224, 2016.12.19.

40) 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

41) 강성훈·이재선·김미정, 전거서, 2017.3, pp.88-89.

42) 김관우·백형관, 「FTA 원산지 실무완성」, 두남, 2013, p.105.

### 3. 누적 원산지검증 관련 규정보완 필요성

FTA 등 특혜무역협정 활용에 있어서 갈수록 원산지증명 및 검증 대응역량이 수출입오더 확보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원산지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sup>43)</sup>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에서의 원산지검증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제13조~1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① 생산자 및 수출자는 신청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② 수입당사국이 원산지정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수출당사국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 ③ 사후검증 전 과정은 6개월 이내 완료 ④ 사후검증 불만족시 수출국에 현지검증 수행 등이 주된 내용이다. 반면, 아세안국가 간 누적기준이 적용된 경우에 대한 즉, 제3국 소재 원재료공급자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주체, 방법 등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 규정은 다자누적이 적용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검증절차와 기간 등이 일반 원산지검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검증대상에는 원재료공급자도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누적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 당사국 외의 계약당사국 소재 원재료공급자 대상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기간 소요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III장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국 검증요청에 대해 협정상대국이 검증기한을 초과하여 회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사유이기도 하다. 검증대응 기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원산지규정 미충족으로 판정되어 협정세율 적용이 제한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소요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원산지검증 관련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소요기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세관당국이 원산지검증 착수 후 검증대상 물품에 누적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또는 검증대상자가 사전에 누적적용 물품에 대한 검증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sup>44)</sup> 한편, 우리나라의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원재료검증 대상이 원재료공급자인 경우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sup>45)</sup>고 규정하였으나, 제3국의 원재료공급자의 경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제3국의 원재료공급자에 대하여는 원산지검증이 적절한지 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누적원산지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그림 3> 사례에서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세관이 베트남 생산자 및 수출자 대상 검증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하고,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베트남 관세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협정문상에 불분명한 원산지 검증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거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3) 고재길, “미국의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국제상학」, 제35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20.6, p.85.

44) 강성훈·이재선·김미정, 전게서, 2017.3, p.85.

4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 제출기한)

## V. 결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지난 2014년 1월 개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상 ‘제조자명 삭제’, ‘유효기간의 연장(6개월 → 1년)’ 조치 등을 보완하여 그 이전보다는 특혜관세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발생 우려차원에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활한 누적기준 적용과 이를 통한 FTA의 경제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보완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수출입 현장의 국내 수입업체-관세당국 간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누적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원재료의 역내산 판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입증서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당사국 관세당국 간 협의기구 마련을 통한 해당규정의 개정작업이 요구되며, 이때 누적대상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수행 공정이나 생산 증명방식과 검증방식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원산지누적의 특성상 실제 활용시 수출입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국 원재료공급자의 원산지증명 서류제공 등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원재료공급자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수출입 당사자 간 계약체결 시 이와 관련된 협조사항과 책임소재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아세안국가 간 누적기준 적용 시 제3국 소재 원재료공급자에 대한 원산지검증 주체·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분명한 원산지 검증방식에 대한 규정도입 및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누적이 적용된 건에 대한 원산지검증 시에는 검증기간 연장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전히 진행형인 미-중간 무역분쟁과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아세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중요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기 발효한 주요 FTA로 대상을 확대하고, 분쟁 당사자를 다양화하는 심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훈, 이재선, 김미정,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3.
- 강준하, “FTA 원산지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3.
- 권순국,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12.
- 고재길, ‘FTA 원산지검증에 대응한 효율적인 매매계약 체결방안: 한-EU FTA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2020.6.
- \_\_\_\_\_, 함영진, “미국의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국제상학」, 제35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20.6.
-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 \_\_\_\_\_,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
- \_\_\_\_\_, “EU-베트남 FTA 8월 시행 앞두고 인증 취득지원” 보도자료 2020.6.25.
- 김관우, 백형관, 「FTA 원산지 실무완성」, 두남, 2013.
- 김성룡, “한-아세안 FTA 주요국 통관 및 중재제도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9.11.
- 김정덕, 곽동철, “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트레이드포커스」, 2017년 24호, 한국무역협회, 2017.6.
- 김영춘, 박홍규, 송병준,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5.5.
- 민혁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KIET 산업경제」, 2020년 9월호, 산업연구원, 2019.9.
- 박지은, 제현정,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트레이드포커스」, 2016년 18호, 한국무역협회, 2016.5.
- 임목삼, 임성철,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6.11.
- 정철, 박순찬, 박인원, 김민성, 곽소영, 정민철, 「원산지 누적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11.
- 조미진, 이병문, 송경은,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비용”, 「무역상무연구」,

-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8.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2020.10.10. 접속 기준)
- 조정란, 유정호, 임병호, “FTA 원산지누적의 경제적 효과: 베트남 섬유산업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9.2.
- 최송자,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 고찰”,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2.
- 한-아세안센터(www.aseakorea.org) 자료실 통계 (검색일자 20.10.12.)
- De Heetkamp, A.V., & Tusveld, R., “Origin Management: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 Springer, 2011.
- Donner Abreu, Mari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 WTO Staff working Paper, No. ERSD-2013-05, 2013.
- Ticon Development Consulting.,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 Opportunities, Potential and Challenger”, Grundlagender Wirtschaftspolitik NR. 21, 2013.



## ABSTRACT

### A Study on the Dispute Cases and Improvement Related to the FTA Cumulation: A Focus on the KOREA-ASEAN FTA

Jai-Kil Ko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becoming a significant concern among countries as the global uncertainty rises with the expansion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he result of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round the world. This study has investigated dispute cases between customs authority and trade corporations based on the KOREA-ASEAN FTA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irstly, the extent (varieties) of the proof document on cumulation and its form should be stipulated and pro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customs from each contracting party. Secondly, it ought to be prescribed as an obligation so that producers located in the third country can cooperate in providing documents for certification of origin. The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ary evidence should also be specified when making EX-IM contracts. Lastly,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s regarding cases to which cumulation is applied have to be complemented so that the verification period's extension can be applied and approved. One can expect that the abovementioned responses on cumulation will enhance the availability of KOREA-ASEAN FTA.

**Key Words** : KOREA-ASEAN FTA, FTA cumulation, origin verification, material cumulation, bilateral cumulation